

# 경주자이르네

##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### !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### ▣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\*(관련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 : **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**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)

### ! 분양계약 체결시 전자수입인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# ▣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/ 우체국 /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### ▣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개정사항 (\*21.1.1부터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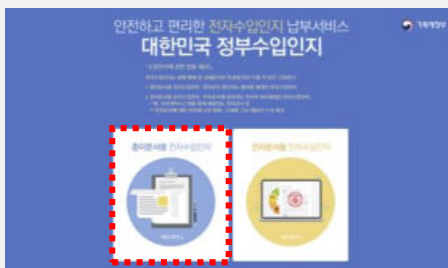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300%
- ❖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, 등기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❖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 이전에 발행한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### !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

### !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(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미방문시)

**1 해당 홈페이지 접속** - 전자수입인지([www.e-revenuestamp.or.kr]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**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**



**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**



**4 구매 - 납부정보입력**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**5 출력**

- ❖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